

공고

기안용지

511

| | | | | |
|---|-----------------|--------------|------------------------------------|------|
| 분류기호 문서번호 | 관일 614 | (전화번호 211) | 권결규정 | 조항 |
| 처리기간 | 건실극장 제자 | | | |
| 시행일자 | 70. 6. 30 | 서울특별시 | | |
| 보존년한 | | | | |
| 보조 기관 | 관리제, 과 보상 제정 | 법무과장 (관리인) | 법무과장 | 법무과장 |
| 기안책임자 | 공고제 127 호 | 인무 6월 30일 | 시민과친 | 법무과장 |
| 경유 수신 참조 | 각안 받음 | 등 계 | 검열 1970. 6. 30 서울특별시 공공문서 | 법무과장 |
| 제목 | 세목 공고 | | | |
| 제 1 단 내부결재 | | | | |
| 건실극장 고시 제 248 호 (70. 6. 24)로 고시된 기업자 구방부 관리이 시행하는 구시탈부리조선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 수용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지 다음공고안과 같이 토지세목 공고를 하고 국민 시행코지 합니다 | | | | |
| 제 2 단 공고안 | | |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 | | | |
| 토지 세목 공고 | | | | |

0201-1-8A

K-1

190mm×268mm 배상지 50g/㎡

1969. 11. 10. 승인

274

(서울특별시립 상정 제정보도공정)

28

1. 건설부 고시 제298호 (70.6.24)로 고시된 다음
 사업구간내에 적용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토지수용법
 제 20조의 취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할나리
 가. 공사명 군사시설 부지조성사업
 나. 기업자 국방부 장관
 다. 토지대목 별리로서와 같음
 라. 공고기간 70.6.30. ~ 70.7.9. (10일간)

1970. 6. 30.

서울특별시장

제 2 안

수신 각 토지소유자 .
 제목 토지대목 공고 토지
 1. 기업자 국방부 장관이 시행하는 군사시설 부지
 구간내에 적용되는 취화소유 아래 토지 토지를 수용하고자
 토지수용법 제 20조의 취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얏기 토지 할나리
 가. 토지의 면적
 (별리로서 개인별 나기 시행)
 나. 공고장소 시청 제1리
 다. 공고기간 70.6.30. ~ 70.7.9. (10일간)

제 4 안

수신 건설부 장관
 제목 토지세목 공고 결과보고

1. 건설부 고시 제 248호(70. 6. 24)로 고시된 기업자
쿠방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사시설 부지 조성사업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토지수용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거 별지와 같이 토지세목 공고 하였기 결과 보고
합니다

첨부 1. 토지세목공고 사본 1부
2. 토지로서 1부 끝

“ 제 5 안 ”

수신 공보실장 백진 관리제 1차장
제목 시보제재의지

1. 기업자 쿠방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사시설
부지 조성사업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토지수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세목공고 하였기
통보하오니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토지세목공고 사본 및 토지로서 각 1부 끝

“ 제 6 안 ”

수신 쿠방부 장관
제목 토지세목공고 결과 회보

1. 관제 126.1 ~ 248(70. 6. 24) 와 관련입니다
2. 국사시설 부지 조성사업구간내 저촉되는 토지
수용하고자 토지수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세목공고 하였기 회보합니다

첨부 토지세목공고 사본 1부 끝

지 권 록 록

| 소 지 기 | 지 권 | 지 목 | 지 역 | 소 유 가 |
|------------|--------|-----|--------|-------|
| 용산구 용산동 5가 | 17- 35 | 대지 | 30,3평 | 이 원 기 |
| " | 17- 35 | " | 32,7 " | 신 성 의 |
| | | | 가 53 평 | |

K-K
276